
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, 위임장 등을 첨부하면 그중 1인 명의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

1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토지보상법") 제16조는 "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7조는 "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, 질의하신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지급 방법 등은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【2022.6.22. 토지정책과-3817】